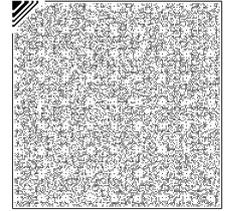




# 수도권대기환경청



수신 통합허가사업장 대표자 귀하  
(경유)

제목 통합허가사업장 관리 철저 요청

1. 우리청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'20.2월부터 통합허가 사업장에 대한 정기검사, 가동 개시 신고, TMS 부착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
2. 이와 관련, 그 동안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< 주요 위반 사례(처분 사항) >

- 허가배출기준 초과 → 개선명령, 행정처분, 초과부과금 부과
-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 또는 자가측정 항목 누락  
→ 조업정지, 과태료 부과(500만원 이하)
-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가동 개시 신고 전(前) 가동 → 고발, 조업정지
-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교체 및 증설 시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 미이행  
→ 사용중지(조업정지) 또는 폐쇄명령, 과태료 부과(1,000만원 이하)
- 허가검토결과서상 허가조건 미준수  
→ 조업정지 또는 허가취소, 과태료 부과(1,500만원 이하) 끝.

수도권대기환경청장



주무관 안형례 과장 전결 2021.8.6. 김건식

협조자

시행 대기총량과-5362 (2021. 8. 6.) 접수

우 1535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로 34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/ 0

전화번호 031-481-1470 팩스번호 031-481-1445 / anddong@me.go.kr / 대국민 공개